

의안번호	2212185
의 퇴 인	이해석의원
회 답 일	2025.8.28.
추계번호	24D4411

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국가등은 언론,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법적·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2	안 제42조의2 (포상)	조사위원회는 10·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3	안 제67조(추모사업 등 시행)	국가등은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, 재난 대응체계 강화 및 효과적인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를 시행하여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4	안 제72조의2 (이태원트라우마센터의 설치·운영)	국가는 피해자와 이태원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등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이태원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며(제1항), 이태원트라우마센터는 국가등이 운영하여야 하며, 이태원트라우마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의무규정
5	안 제78조의2 (소멸시효에 관한 특례)	10·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「민법」 및 「국가재정법」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42조의2(포상)	2025년 예산에 1억 5,000만원 편성
3	안 제67조(추모사업 등 시행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추계가 어려운 경우
4	안 제72조의2(이태원트라우마센터의 설치·운영)	
5	안 제78조의2(소멸시효에 관한 특례)	

2. 상세 사유

□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실시(안 제4조제3항)

- 개정안은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언론,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고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법적·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
- 개정안에 따른 홍보 및 교육의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홍보 및 교육의 대상과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지만,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으므로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

□ 피해자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(안 제67조제3항)

- 개정안은 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, 재난 대응체계 강화 및 효과적인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를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
- 개정안에 따라 장기 추적 연구를 시행하는 경우 그 연구수행에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,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현시점에서 피해자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관한 장기 추적 연구의 범위와 기간, 연구의 수준 등에 관한 정보가 없으므로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

□ 이태원트라우마센터의 설치·운영(안 제72조의2)

- 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피해자와 이태원지역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등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이태원트라우마센터를 설치·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
- 개정안에 따라 이태원트라우마센터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, 이태원트라우마센터의 건축비, 직원 인건비, 운영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
되지만, 이태원트라우마센터의 설치지역과 규모,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의 규모를 현시점에서 추정할 정보가 없으므로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

- 참고로, 보건복지부는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의2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(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)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¹⁾를 설치·지정·운영 중에 있음

□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(안 제78조의2)

- 개정안은 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「민법」 및 「국가재정법」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으로 하려는 것임
- 개정안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특례가 인정되면, 소멸시효의 연장에 따라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의 제기가 증가할 수 있고,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액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액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서는,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기간에 제기될 손해배상소송의 건수와 그 손해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피해유형, 과실률, 노동력상실률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,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할 정보가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
- 참고로,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태원참사 피해 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10·29이태원참사 희생자·피해자 등의 현황: 2025.7. 기준

(단위: 명)

구분	희생자	피해자		합계
		유가족 ¹⁾	피해 인정자 ²⁾	
인원	159	483	137	779

주 1) 희생자 143명의 유가족 인원임(일부 희생자 미신청)

2)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사·결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임

자료: 행정안전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

1) 영남권(국립부곡병원), 충청권(국립공주병원), 호남권(국립나주병원), 강원권(국립춘천병원)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장삼열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삼열	02-6788-4831	jsy@na.go.kr